

2016학년도 제5차 <제327차 이사회 회의록>

2017. 2. 9.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6학년도 제5차

<제327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1 인

1. 일 시 : 2017. 2. 9(목) 07:30 ~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7년 2월 1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김 성, 김동연,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11인)
- 감사 : 배홍기 (1인)

◎ 결석임원

- 이사 : 박상일 (1인)
- 감사 : 문휘창 (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료원장 유희석, 기획처장 이중섭,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교무부처장 장우진, 예산팀장 조경숙, 기획팀장 김의섭 (6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신성호, 기획처장 류지호, 행정처장 최종범 (3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김창현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 중 열한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1 -

이 사

이 사

6. 보고사항

이사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섭 기획처장 ·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사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전

상임이사 이영현 : 제327차 이사회 심의안전은 학법대우 제16-477호(2017.2.1)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 · 재임용 · 승진 임용 동의(안), 의안 제2호 아주자동차대학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3호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의안 제4호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5호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6호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의안 제7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의안 제8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9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 · 재임용 · 승진 임용 동의(안), 의안 제10호 아주대학교 규정류 개정(안), 의안 제11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안 제12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의안 제13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4호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15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의안 제16호 수익용재산(북성주차빌딩) 매각 승인(안), 의안 제17호 2016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8호 2017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9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의안 제20호 2017학년도 상근임원 보수책정 승인(안) 등 20개의 안전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 · 재임용 · 승진임용 동의(안)

이사장 :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 · 재임용 · 승진임용 동의(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 · 재임용 · 승진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임용 대상자는 전임교원 조교수 2명과 정년트랙 산학협력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 2 -

이사 이영현

중점교원으로 조교수 1명 및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부교수 1명을 제청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재임용 대상자는 2명으로 본교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승진 임용 대상자는 1명으로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 동의 요청드립니다.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제청자의 교원업적평가, 연구실적 및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신회택 : 해당 교원의 이력과 연구실적 등을 검토한 결과 임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자동차계열	이상욱	조교수	2017.3.1. ~ 2020.2.29. (3년)
자동차계열	류경진	조교수	2017.3.1. ~ 2020.2.29. (3년)
자동차계열	이제욱	조교수 (산학협력중점교원)	2017.3.1. ~ 2020.2.29. (3년)
자동차계열	이광원	부교수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	2017.3.1. ~ 2020.2.29. (3년)

- 이상 4명 -

나. 재임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자동차계열	장현탁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자동차계열	김영우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 이상 2명 -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다. 승진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 용 기 간
자동차계열	최 성 철	교 수	2017.3.1. ~ 정년

- 이상 1명 -

제 2 호 아주자동차대학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불용자산은 총 1,014점, 취득가액 370,843,244원으로 대부분이 노후화와 고장, 버전 낙후 등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기구와 집기비품류에 대하여 불용 처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성복 :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들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3 호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아주자동차대학의 2016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임의건축기금 등 기금적립, 등록금 수입 감소, 국고지원사업 재원활용에 따른 일반 관리운영비 절감,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및 수혜학생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 기숙사 신축 관련 건축비 절감 및 기숙사 집기비품 구입비를 반영 편성한 예산(안)으로 전체 규모는 제1차 추경예산 대비 513,288천원이 감소한 12,116,71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추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동연

이 사 이영현

경 예산(안)의 자세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총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운영수지가 3억으로 1차 추경 대비 0.6억이 개선되었으나, 기금 적립 증가 등으로 자금이 1.9억 감소하여 0.3억이 차기로 이월되는 예산(안)입니다. 기금 적립으로 이월자금 규모가 0.3억으로 급감함에 따라 향후 이월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만큼 향후 대규모 사업은 보다 계획적으로 기금 적립 및 인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선용 : 추경 예산(안)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관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액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증감
수입	등록금수입	6,171,152	6,397,700	(226,548)
	전입 및 기부수입	2,392,932	2,584,879	(191,947)
	교육부대수입	712,218	747,260	(35,042)
	교육외수입	143,709	177,460	(33,751)
	고정부채입금	0	26,000	(26,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696,707	2,696,707	0
	계	12,116,718	12,630,006	(513,288)
지출	보수	3,559,343	3,588,049	(28,706)
	관리운영비	2,242,739	2,504,740	(262,001)
	연구학생경비	3,222,712	3,483,759	(261,047)
	교육외비용	57,730	57,730	0
	예비비	40,000	40,000	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259,280	15,050	244,230
	고정자산매입지출	2,684,547	2,719,340	(34,793)
	고정부채상환	20,000	0	20,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0,367	221,338	(190,971)
	계	12,116,718	12,630,006	(513,288)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제 4 호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자금예산(안)은 수입 대비 지출 균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대학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재학생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관 신축관련 비용 반영 등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자금예산(안) 총 규모는 10,036,525천원으로서 전년도 제2차 추경예산 대비 2,080,19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의 자세한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총장이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아주자동차대학 보수가 아직까지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2017학년도에도 4% 인상 반영되었으나, 재원인 등록금수입이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정원외 입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으로 2017학년도 등록금수입이 2.3% 증가 반영하여 보수 4% 인상을 위한 등록금수입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 보수 인상액은 등록금수입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3%만 지급하고 나머지 1%는 등록금 수입의 목표 달성을 상황을 보고 향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지적해 주신대로 보수와 관련하여 나머지 1%는 등록금 수입 현황을 확인하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성진 : 감사님 의견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최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관 별	2017학년도 예산액	2016 제2차 추경예산액	증 감
수 입	등 록 금 수 입	6,313,640	6,171,152	142,488
	전 입 및 기 부 수 입	2,606,332	2,392,932	213,400
	교 육 부 대 수 입	952,489	712,218	240,271
	교 육 외 수 입	113,697	143,709	(30,012)
	고 정 부 채 입 금	20,000	0	2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0,367	2,696,707	(2,666,340)
계		10,036,525	12,116,718	(2,080,193)
지 출	보 수	3,753,382	3,559,343	194,039
	관 리 운 영 비	2,284,816	2,242,739	42,077
	연 구 학 생 경 비	3,462,954	3,222,712	240,242
	교 육 외 비 용	57,730	57,730	0
	예 비 비	40,000	40,000	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316,650	259,280	57,370
	고정자산매입지출	116,800	2,684,547	(2,567,747)
	고 정 부 채 상 환	0	20,000	(20,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193	30,367	(26,174)
계		10,036,525	12,116,718	(2,080,193)

제 5 호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기계장치, 의료기기, 의료비품, 일반비품, 전산장비,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총 5,344점, 취득금액 5,281,456,992원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의 불용자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성진 : 내용연수가 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불용처분으로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6 호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환자 및 보호자가 사망, 실종, 경제적 파산(무능력),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장기간 추심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입원·외래 진료비 미수금 45,236,150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여 재무회계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대손상각 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문길주 : 채권 채무 시효가 소멸된 미수금으로 내용상 회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재무회계 건전성을 위한 대손상각 처리로 판단되기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7 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은 의료수입 목표 수정에 따른 지출예산 조정, 2016학년도 예산 집행 사업결과에 따른 예산 재조정, 2016년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예비비 조정, 국고수입 증감에 따른 대응 지출 증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속병원의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추경예산 대비 2,600백만원 증가한 554,71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7/6 동연

이사 이영현

자금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 흥 기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검토한 바, 의료수익은 이미 3~12월 의료수익 실적이 1차 추경 대비 85.3%로 83.3%보다 2% 초과 달성이하여 남은 기간 특이한 변수만 없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기순이익 26억도 남은 기간 진료일수, 명절 연휴기간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목표 초과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 성 복 : 예산 편성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액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수 입	의 료 수 입	467,020	464,800	2,220
	의 료 외 수 입	26,773	25,023	1,750
	차 입 금 수 입	14,507	15,217	(710)
	기 타 수 입	260	920	(660)
	전 기 이 월 자 금	46,158	46,158	0
	계	554,718	552,118	2,600
지 출	의 료 지 출	404,289	398,229	6,061
	의 료 외 지 출	15,997	16,341	(344)
	고 정 자 산	40,569	43,547	(2,978)
	차 입 금 상 환	10,805	11,387	(582)
	전 출 금	47,105	46,108	997
	예 비 비 등	760	5,950	(5,190)
	차 기 이 월 자 금	35,193	30,557	4,636
	계	554,718	552,118	2,600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71동연

이사 이영현

제 8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2017학년도 부속병원회계의 자금예산은 의료수입은 공격적으로 의료지출은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법적 충족을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반영, 내원객 편의 증진 및 의료수입 증대를 위한 리모델링 반영, 연구중심병원 R&D 사업 육성사업 예산 반영, 경영효율화 및 전산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산장비 반영 등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속병원회계의 2017학년도 자금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2016학년도 2차 추경예산 대비 23,862백만원 증가한 578,5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 흥 기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은 2017학년도에 Triple 5(일평균 외래환자 5,000명, 의료수익 5,000억, 의료이익률 5%) 목표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의료수익대비 의료이익률이 5.0% 수준이나 2016학년도와 같이 임단협을 통한 인건비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4.1%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2016학년도에 의료수익이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17학년도 목표 8.0%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나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에 전년 대비 각각 4.8%, 4.2% 증가된 것을 고려할 경우 다소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은 아닌지 판단되며 의료비용도 5.3% 증가하여 의료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의료손실 발생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에도 월별, 분기별 의료비용 집행을 통제하고 의료수익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추경 예산을 통하여 비용을 삭감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예산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사 윤성복 : 의료이익 목표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병원의 가동률 등 수익구조가 좋아지고 있어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승인(안)을 심의 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ㅎ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2017학년도 예산액	2016 제2차 추경예산액	증 감
수 입	의 료 수 입	504,400	467,020	37,380
	의 료 외 수 입	23,367	26,773	(3,406)
	차 입 금 수 입	14,700	14,507	193
	기 타 수 입	920	260	660
	전 기 이 월 자 금	35,193	46,158	(10,965)
	계	578,580	554,718	23,862
지 출	의 료 지 출	426,134	404,289	21,845
	의 료 외 지 출	17,165	15,997	1,168
	고 정 자 산	23,211	40,569	(17,358)
	차 입 금 상 환	10,930	10,805	125
	전 출 금	50,106	47,105	3,001
	예 비 비 등	5,960	760	5,200
	차 기 이 월 자 금	45,075	35,193	9,882
	계	578,580	554,718	23,862

제 9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 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 임용 동의(안) 발의.

교무부처장 장우진 : 본교 임용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3명이며, 재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1명과 특임교원 대우부교수 3명입니다. 승진임용대상자는 총 21명으로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이 15명,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이 6명입니다. 각 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별첨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다음으로 의료원 전임교원 승진 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진 임용대상자는 총 11명이 임용 제청되었으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이 5명,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이 6명입니다. 승진 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상협 : 본교에서 열린 특별채용 제도를 도입하여 좋으신 분을 초빙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열린 채용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학문 분야의 임팩트 요소 상위 몇퍼센트 이내 등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면 제도 정착 및 효과 극대화에 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 김성 : 열린 채용 방식을 절대평가로 운영하다 보면 특정 학문 분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문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 이 외 원(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신희택 : 이력내용 및 연구업적 등을 살펴보니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 임용 동의(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최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 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기계공학과	한승용	조교수	2017.3.1 ~ 2020.2.29 (3년)
	기계공학과	고제성	조교수	2017.3.1 ~ 2020.2.29 (3년)
	신소재공학과	이재현	조교수	2017.3.1 ~ 2020.2.29 (3년)

- 이상 본교 3명 -

나.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경영학과	백연정	조교수	2017.3.1 ~ 2020.2.29 (3년)
	경영학과	김용기	대우부교수	2017.3.1 ~ 2019.2.28 (2년)
	공공정책대학원	권혁성	대우부교수	2017.3.1 ~ 2019.2.28 (2년)
	교육대학원	유미현	대우부교수	2017.3.1 ~ 2018.2.28 (1년)

- 이상 본교 4명 -

다. 승진 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산업공학과	김재훈	교수	2017.3.1 ~ 정년
	화학공학과	김주민	교수	2017.3.1 ~ 정년
	건축학과	전유창	교수	2017.3.1 ~ 정년
	전자공학과	권익진	교수	2017.3.1 ~ 정년
	미디어학과	이주엽	교수	2017.3.1 ~ 정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7월 동연

이사 이영천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 료 원	수학과	이기정	교수 2017.3.1 ~ 정년
	물리학과	염동일	교수 2017.3.1 ~ 정년
	물리학과	하나영	교수 2017.3.1 ~ 정년
	국어국문학과	문혜원	교수 2017.3.1 ~ 정년
	영어영문학과	박정식	교수 2017.3.1 ~ 정년
	불어불문학과	손정훈	교수 2017.3.1 ~ 정년
	문화콘텐츠학과	전윤수	교수 2017.3.1 ~ 정년
	행정학과	배상석	교수 2017.3.1 ~ 정년
	법학전문대학원	장정애	교수 2017.3.1 ~ 정년
	법학전문대학원	한지영	교수 2017.3.1 ~ 정년
	전자공학과	허준석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소프트웨어학과	손경아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수학과	정의진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물리학과	김성환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경영학과	박청규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약학과	이동주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마취통증의학교실	조한범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병리학교실	이다근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신경과학교실	이진수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안과학교실	정승아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핵의학과교실	이수진	부교수 2017.3.1 ~ 2023.2.28 (6년)
	생리학교실	이 광	교수 2017.3.1 ~ 정년
	마취통증의학교실	박성용	교수 2017.3.1 ~ 정년
	외과학교실	김봉완	교수 2017.3.1 ~ 정년
	안과학교실	국경훈	교수 2017.3.1 ~ 정년
	정신건강의학교실	조선미	교수 2017.3.1 ~ 정년
	간호학과	김춘자	교수 2017.3.1 ~ 정년

- 이상 본교 21명, 의료원 11명 -

제 10 호 아주대학교 규정류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규정류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이중섭 : 본교에서는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직원 인사규정 개정(안)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규정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처장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다음으로 의료원 규정 개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및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준비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하였습니다. 자세한 규정별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신상협 :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석좌교수 임명 기준이 모호하면 향후 심의가 어렵고 운영이 상당히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처장 이중섭 : 교원인사규정에서는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에 관한 기준은 석좌교수에 관한 규칙으로 만들어 빠르면 금년 2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사신상협 : 그럼 그 시행이 긴급하지 않다면 본교에서 구체적인 임명 기준을 마련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사장 :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규정류 개정(안) 중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은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합니다. 이 외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김성진 : 나머지 규정 개정(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 의결(안) 외 나머지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윤성복 : 재청합니다.

이사장 :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규정류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 중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규정류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가.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현 행	개 정
제5조 (기구) ① 내지 ③ (생략) 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u>연구처</u> ,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	제5조 (기구)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u>연구정보처</u> ,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 2. <u>연구처장</u> : 중앙도서관, <u>중앙전산원</u>, 박물관 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 4. <삭제>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 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소속이 없는 지원기관으로 <u>학생군사교육단</u>, <u>예비군연대</u>, <u>과학영재교육원</u>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 2. 다산학부대학 : 의사소통센터,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 5. 교무처 : 교직부 6. <u>연구처</u> : 공동기기센터 7. 학생처 : 아주상담·지원센터, 성폭력상담 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u>신설</u>> <p><<u>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 9.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 터 10. 중앙도서관 : 출판부 11.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 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u>산학연교 육센터</u>, 비교과교육지원센터 12.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p>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 2. <u>연구정보처장</u> : 중앙도서관, 박물관 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 4. <삭제>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 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 2. 다산학부대학 : 의사소통센터,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 5. 교무처 : 교직부, <u>과학영재교육원</u> 6. <u>연구정보처</u> : 공동기기센터 7. 학생처 : 아주상담·지원센터, 성폭력상담 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u>학생 군사교육단</u> <p><u>8. 총무처 : 예비군연대</u></p> <p><u>9.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u></p> <p><u>10.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 터</u></p> <p><u>11. 중앙도서관 : 출판부</u></p> <p><u>12.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 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교 육지원센터</u></p> <p><u>13. <삭제></u></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7월 20일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u>13. 대학언론사</u>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실, 비서실 및 <u>산학협력선도대학(LINC)</u> 육성사업단을 둔다.</p> <p>⑨ 내지 ⑩ (생략)</p> <p>제9조 (대학교본부) ① (생략) ② <u>연구처</u>는 연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연구팀을 둔다.</p> <p>③ 내지 ⑩ (생략)</p> <p>제10조 (부속기관) ① 부속기관에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 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 <u>2. 중앙전산원 : 정보시스템팀</u> 3. 평생교육원 : 교학팀 4. 대학교육혁신원 : 운영팀 5.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운영팀 6. <삭제> ③ 내지 ④ (생략)</p> <p>제12조 (총장직속기구) ① <삭제> ② 브랜드전략실은 브랜드 차별화와 관리를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비서실은 총장 의견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외협력팀을 둔다. ④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정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의한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⑤ <삭제> <신설></p>	<p><u>14. 대학언론사</u>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실, 비서실, <u>산학협력선도대학(LINC)</u> 육성사업단 및 <u>의료인문융합콘텐츠센터</u>를 둔다.</p> <p>⑨ 내지 ⑩ (생략) (현행과 같음)</p> <p>제9조 (대학교본부)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u>연구정보처</u>는 연구관리 및 전산개발/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연구팀 및 정보시스템팀을 둔다.</p> <p>③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p>제10조 (부속기관) ① 부속기관에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 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 <u>2. <삭제></u> 3. 평생교육원 : 교학팀 4. 대학교육혁신원 : 운영팀 5.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운영팀 6. <삭제> 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총장직속기구) ① <삭제> ②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p><u>⑥ 의료인문융합콘텐츠센터는 의료인문 콘텐츠</u></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76동 51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⑥ 브랜드전략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브랜드전략실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⑦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⑧ 대외협력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신 설></p>	<p>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p> <p>⑦ 브랜드전략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브랜드전략실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⑧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⑨ 대외협력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⑩ 의료인문융합콘텐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제14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에 교무회의를 두고, 교무회의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교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에 교무회의를 두고, 교무회의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교무처장, 연구정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나. 직원인사규정

현 행	개 정
제28조(승급) ① 호봉제의 경우, 직원의 호봉승	제28조(승급) ① 호봉제의 경우, 직원의 호봉승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급은 신규채용 또는 전승급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매년 3월 1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한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직원의 호봉승급은 <u>2호봉 승급</u>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할 수 있으며, 특별승급은 정기승급을 포함하여 <u>3호봉</u>으로 한다.</p> <p>③ 승급제한은 본 규정 제27조를 준용한다.</p>	<p>급은 신규채용 또는 전승급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직원의 호봉승급은 <u>1호봉 승급</u>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할 수 있으며, 특별승급은 정기승급을 포함하여 <u>2호봉</u>으로 한다.</p> <p>③ 승급제한은 본 규정 제27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다. 보수규정

현 행	개 정
<p>제9조(제수당의 종류) ① 교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유류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급량비, 학생지도비로 구분한다.</p> <p>② 직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급량비, 유류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 육아휴직수당으로 구분한다.</p>	<p>제9조(제수당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직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급량비, 유류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 육아휴직수당, <u>연차수당</u>으로 구분한다.</p>
<p>제18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내지 ② (생략)</p> <p>(신설)</p>	<p>제18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3(연차수당)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8조의3(학생지도비) (생략)</p>	<p>제18조의4(학생지도비) (현행과 같음)</p>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 18 -

7/26 연 이사 이경현

현 행	개 정
	<u>부 칙</u> <u>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u>

라. 의료원 직제규정

현 행	개 정
<p>제15조(진료부) ① 진료부원장 산하에는 암센터 장, 내과부장, 외과부장을 둔다.</p> <p>② 진료부에는 진료부서로 내과부(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 내과, 종양혈액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외과부(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 과,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 췌담도외과, 소아외 과, 유방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식혈관외과, 외상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 과, 피부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 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수술 실, 집중치료실, 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둔 다.</p> <p>③ 진료부에는 진료지원부서로 감염관리실, 진료 협력센터, 약제팀, 영양팀, 의무기록팀, 사회사 업팀, 의용공학팀을 둔다.</p> <p>④ 내과부 및 외과부 각과, 진료 각과, 각실 및 각 센터에는 과장, 실장 또는 소장을 둘 수 있으 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⑤ 각 센터의 소장은 임상과장장을 겸직할 수 있다.</p> <p>⑥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 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에는 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사장을, 감염관리실, 진료협 력센터에는 실장 또는 소장을 보좌하는 운영팀</p>	<p>제15조(진료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진료부에는 진료지원부서로 감염관리실, 진료 협력센터, 약제팀, 영양팀, 의무기록팀, 사회사 업팀, 의용공학팀을 두며, <u>암센터에는 운영지원 팀을 둔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장을 들 수 있다.</p> <p>제16조(교육인재개발부) ① 교육인재개발부에는 교육수련부, 임상약학교육실, 아카데미팀, <u><삽입></u>을 둔다. ② 교육수련부와 임상약학교육실에는 각각 부장과 실장을 둘 수 있다. ③ 아카데미팀 <u><삽입></u>에는 팀장을 두며, 교육수련부에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p> <p>제20조의 2(간호본부) 간호본부에는 <u>간호행정교육팀</u>, 외래간호팀, 병동간호1팀, 병동간호2팀, 집중간호팀, 응급간호팀, 외상간호팀, 수술간호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제16조(교육인재개발부) ① 교육인재개발부에는 교육수련부, 임상약학교육실, 아카데미팀, <u>간호교육팀</u>을 둔다. ② 교육수련부와 임상약학교육실에는 각각 부장과 실장을 둘 수 있다. ③ 아카데미팀, <u>간호교육팀</u>에는 팀장을 두며, 교육수련부에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p> <p>제20조의 2(간호본부) 간호본부에는 <u><삭 제></u>, 외래간호팀, 병동간호1팀, 병동간호2팀, 집중간호팀, 응급간호팀, 외상간호팀, 수술간호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제20조의 6(첨단의학연구원) ① 첨단의학연구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② 첨단의학연구원장은 연구원 산하 연구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한다. ③ 첨단의학연구원에는 산하 연구기관, 실험동물연구센터, 연구행정팀을 두며, 실험동물연구센터에는 소장을 연구행정팀에는 팀장을 둔다. <u>다면 실험동물연구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을 둘 수 있다.</u> ④ 전향의 산하 연구기관이라 함은 의료원의 연구활동을 위해 첨단의학연구원에 설치하는 연구소 및 센터로서, 산하 연구기관의 종류 및 설폐·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20조의 6(첨단의학연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첨단의학연구원에는 산하 연구기관, 실험동물연구센터, 연구행정팀을 두며, 실험동물연구센터에는 소장을 연구행정팀에는 팀장을 둔다. <u>다면 실험동물연구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을 둘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p>
	부 칙 <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20 -

7/26 일

이사 이영현

마. 의료원 보수규정

현 행	개 정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내지 7. <생략></p> <p>8.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u>특수부서수당</u>, 특수업무수당, 군필수당) 및 제2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의 연 400%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삽입></p> <p><이하 생략></p> <p>제7조(보수지급) ①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월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p> <p>②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본인이 지정하는 계좌</u>로 지급한다.</p> <p>제9조(제수당의 종류) ① 교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유류비, 식대보조비, 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구분한다.</p> <p>② 직원의 제수당은 법정수당, 직책수당, <u>특수부서수당</u>,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유류비, 휴가비, 보건수당, 군필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구분한다.</p> <p>제12조(특수부서수당) 직원이 재해, 질병의 감염 기타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특수부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내지 7. <생략></p> <p>8.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삭제>, 특수업무수당, 군필수당) 및 제2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의 연 400%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여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p> <p><이하 생략></p> <p>제7조(보수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본인명의의 계좌</u>로 지급한다.</p> <p>제9조(제수당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직원의 제수당은 법정수당, 직책수당, <삭제>,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유류비, 휴가비, 보건수당, 군필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구분한다.</p> <p>제12조 <삭제></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7/26 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제13조(특수업무수당) ① 기초의학교실에 소속된 <u>교원 또는 연구강사가</u> 의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별표2에서 정한 MD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u>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u> 별표2에서 정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u>1. 특수업무간호사</u></p> <p><u>가. 집중치료실, 응급실, 수술실 근무 간호사</u></p> <p><u>나. 전담업무 간호사</u></p> <p><u>2. 약제팀에 근무하는 약사</u></p> <p><u>3. 관공서에 선임 등록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u></p> <p><u>4. 경리출납자</u></p>	<p>제13조(특수업무수당) ① 기초의학교실에 소속된 <u>교원<삭 제></u>이 의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별표2에서 정한 MD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u>교직원에게는</u> 별표2에서 정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u>1. <삭 제></u></p> <p><u>2. <삭 제></u></p> <p><u>3. <삭 제></u></p> <p><u>4. <삭 제></u></p>
<p>제23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교직원(외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국내 <u>중고등학교</u>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3월, 6월, 9월, 12월에 별표2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p> <p>② 자녀가 외국의 <u>중고등학교</u>, 외국인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내 국공립 <u>중학교 또는 고등학교</u> 학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 이외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이하 생략></p>	<p>제23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교직원(외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국내 <u>고등학교</u>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3월, 6월, 9월, 12월에 별표2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p> <p>② 자녀가 외국의 <u>고등학교</u>, 외국인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내 국공립 <u>고등학교</u> 학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 이외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p> <p><이하 생략></p>
<p>제24조(기타) ① 특별임용교원의 보수는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을 따른다.</p> <p>② <u>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공의, 조교, 계약직(임시직, 연구원 등)</u>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교직원이 진료, 수술, 시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을 한 경우에는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은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p> <p>④ 보수 중 상여금, 가족수당, 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보수지급일 재직자 중 해당 월 16</p>	<p>제24조(기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임상(연구)강사, 전공의의 보수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의 보수는 총장이, 계약직의 보수는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72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보수일에 지급한다. <u><신설></u>	<p>⑤ <u>직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업적 및 실적 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⑥ <u>강의료, 교재개발, 심사비, 자문비, 학생활동지도비, 논문심사 및 지도비 등 연봉외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은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특수업무수당은 2017년 3월 1일 부 시행한다.</u></p>

바.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현 행	개 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u><삽 입></u> 아주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6장 제3절에서 정한 아주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u>직원의 신분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한다.</u> ② 직원의 직군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I, 기능직 II로 구분한다. ③ 직원의 직군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정원관리) 의료원 직원의 정원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1년 미만의 한시적 고용을 위한 계약직은 예외로 하되 임용 후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관리) 의료원 직원의 정원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712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제23조(임면기준) ① 임용자의 임면기준은 직군별 직급, 직위 분류표(별표1)에 의한다.</p> <p>② 임용자의 초임호봉은 초임호방 사정 기준표(별표2)에 의한다.</p> <p>③ <u>경력이 있는 자의 호봉은 경력연수 환산율표(별표4)</u>를 적용하여 책정한다.</p>	<p>제23조(임면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경력이 인정된 자의 호봉은 경력연수 환산율표(별표4)</u>를 적용하여 책정한다.</p>
<p>제25조(수습기간) ① 신규임용직원의 수습기간은 발령일로부터 <u>3개월로 한다</u>. 다만, 특수한 경력 또는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② 수습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졸업예정자를 직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졸업이후에 정규발령을 하여야 한다.</p> <p>④ 수습기간 중에는 보수지급일에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및 제수당만 지급한다.</p> <p>⑤ 수습기간은 <u>근속년수</u>에 산입한다.</p>	<p>제25조(수습기간) ① 신규임용직원의 수습기간은 발령일로부터 <u>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수습기간은 <u>근속기간</u>에 산입한다.</p>
<p><u><신 설></u></p>	<p>제25조의 2(임시직원) 필요시 한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6조(승진,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승급이 될 수 없다.</p> <p>1. <u>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대기기간 중에 있는 자</u></p> <p>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p> <p>3. 승진, 승급일 현재 1년간 근무평정 또는 근태상황이 극히 불량한 자</p>	<p>제36조(승진,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승급이 될 수 없다.</p> <p>1. <u>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7/2 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② 전항에 의하여 승진 또는 승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p> <p>③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어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p> <p>④ 승진 및 승급 소요연한에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공상휴직과 육아휴직 기간은 <u>승진 및 승급 소요연한으로 산정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승진 및 승급 소요연한에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공상휴직과 관계법령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p>
<p>제40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 내지 6. <생략></p> <p>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p> <p>8.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요청할 때</p> <p>9.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된 때</p> <p>② 휴직중의 직원은 그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p>	<p>제40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p>
<p>제41조(휴직기간) 전 제40조 제1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p>1. 내지 5.<생략></p> <p>6. <u>제7호 및 제8호 해당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u></p> <p><u><신 설></u></p>	<p>제41조(휴직기간) 전 제40조 제1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p>1. 내지 5. <현행과 같음></p> <p>6. <u>제7호 해당자는 2년 이내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u></p> <p><u>7. 제8호 해당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u></p>
	<p><u>부 칙</u></p> <p>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 25 -

제 11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발의.
교무부처장 장우진 :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2017학년도 신임교원 채용계획은 당초 22명으로 이사회 승인받았으나, 정년트랙 중도퇴직 2명과 2018학년도 정년퇴직 T/O 2명을 조기 임용하여 지표개선 및 우수인력을 선점하고자 당초 계획대비 4명이 증가한 26명으로 변경 승인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신상협 : 교원확보율 개선을 위한 채용 계획(안)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2 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처장 이중섭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학부, 대학원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예산 반영, 건축기금 인출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대비 112억원이 감소한 2,481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처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1차 추경시 학부 재학생 감소에 따른 등록금수입 감소를 기반으로 하였음에도 2차 추경시 추가적으로 학부를 비롯한 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의 등록금수입이 감소하여 1차 추경시보다 학교 재정이 더 어려워져 운영지출 예산을 절감하려는 자구노력 및 간호대학, 약학관 등 주요 사업의 차년도 이월 등으로 운영수지, 자금수지 등 재정 상황이 1차 추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경 대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금 수입 예산이 약 54.6억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5일까지 실적이 약 40억 수준으로 실적대비 예산이 다소 과대 계상되어 향후 추가적인 자금 감소가 우려되므로 기부금 유치에 총력을 다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추경 예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관 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액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수 입	등록금및수강료수입	1,266	1,285	(19)
	전입및기부금수입	891	876	15
	교 육 부 대 수 입	134	140	(6)
	교 육 외 수 입	29	29	-
	투자와기타자산수입	71	172	(101)
	고 정 부 채 수 입	1	2	(1)
	미사용전기이월자금	89	89	-
계		2,481	2,593	(112)
지 출	보 수	1,198	1,202	(4)
	관 리 운 영 비	258	258	-
	연 구 학 생 경 비	789	820	(31)
	교 육 외 비 용	12	14	(2)
	자 산 취득	84	171	(87)
	투자와기타자산지출	74	84	(10)
	고 정 부 채 지 출	10	18	(8)
	예 비 비	3	5	(2)
	미사용차기이월자금	53	21	32
	계	2,481	2,593	(112)

< 간서명 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7월 동연

이사 영현

제 13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이중섭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은 대내외 재정 운영 여건 극복을 위한 건전성 제고, 재정투자의 극대화,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기 선제적 대응, 구성원들의 재정구조 인식을 통한 수입 실현의 다각화를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자금예산의 규모는 2016학년도 제2차 추경예산 대비 108억원이 증가한 2,589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처장이 자금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아주대학교 2017학년도 본예산(안)은 운영수지가 2016년 대비 7.1억 개선되었으나, 약학관 증축, 간호대 신축, 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용기기 구입 등 운영수지를 110.4억 초과한 총 180.3억의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기금 △123.8억이 순인출되는 예산(안)으로 운영수지 대비 자산 취득 규모가 다소 큰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기초 53.1억에서 기말 45.6억으로 △7.5억의 자금이 감소하는 예산(안)임에도 외국인학생 증가 등 등록금 수입 11.2억 증가, 전임 신임 교원 T/O 6명 보수 감소, 교육용 전기료 인하 예상 1.7억 감소 등 수입은 과대, 지출은 과소 반영된 측면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자금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운영에 감안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성진 : 감사님 의견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관 별	2017학년도 예산액	2016 제2차 추경예산액	증 감
수 입	등록금및수강료수입	1,281	1,266	15
	전입및기부금수입	928	891	37
	교 육 부 대 수 입	124	134	(10)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7/2 등연 이사 이영현

구 분	관 별	2017학년도 예산액	2016 제2차 추경예산액	증 감
지 출	교 육 외 수 입	29	29	-
	투자와기타자산수입	174	71	103
	고 정 부 채 수 입	0	1	(1)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3	89	(36)
	계	2,589	2,481	108
	보 수	1,224	1,198	26
	관 리 운 영 비	253	258	(5)
	연 구 학 생 경 비	804	789	15
	교 육 외 비 용	11	12	(1)
지 출	자 산 취득	180	84	96
	투자와기타자산지출	50	74	(24)
	고 정 부 채 지 출	17	10	7
	예 비 비	4	3	1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6	53	(7)
	계	2,589	2,481	108

제 14 호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이중섭 : 아주대학교 2016학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본교의 불용품은 5,262점에 취득가 5,122,798,405원으로 조사되어 해당 고정자산을 불용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번 불용자산은 대부분이 노후로 인한 사용불가이며 기타 고장, 소모, 부속 부족으로 인한 불용처분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선 용 :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불용처분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동연 이 사 이영현

제 15 호 아주대학교 보직 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교원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사회과학대학장에 사회학과 김병관 부교수, 대학원장에 산업공학과 장중순 교수, 공공정책대학원장에 행정학과 김홍식 부교수, 공학대학원장에 환경안전공학과 이건모 교수, 교통·ITS대학원장에 교통시스템공학과 이철기 교수, 교무처장에 미디어학과 장우진 교수, 연구정보처장에 미디어학과 최정주 교수, 기획처장에 수학과 이중섭 교수, 입학처장에 사회학과 이선이 부교수, 국제협력처장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 첨단의학연구원장에 의학과 박해심 교수, 대외협력실장에 의학과 신규태 교수를 2017년 3월 1일부로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드립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진 : 이력사항을 살펴보니 본교 및 의료원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요청일자
사회과학대학장	사회학과	부교수	김 병 관	2017. 3. 1부
대학원장	산업공학과	교 수	장 중 순	2017. 3. 1부
공공정책대학원장	행정학과	부교수	김 홍 식	2017. 3. 1부
공학대학원장	환경안전공학과	교 수	이 건 모	2017. 3. 1부
교통·ITS대학원장	교통시스템공학과	교 수	이 철 기	2017. 3. 1부
교무처장	미디어학과	교 수	장 우 진	2017. 3. 1부
연구정보처장	미디어학과	교 수	최 정 주	2017. 3. 1부
기획처장	수학과	교 수	이 중 섭	2017. 3. 1부
입학처장	사회학과	부교수	이 선 이	2017. 3. 1부
국제협력처장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소 병 천	2017. 3. 1부
첨단의학연구원장	의학과	교 수	박 해 심	2017. 3. 1부
대외협력실장	의학과	교 수	신 규 태	2017. 3. 1부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 사 1/2 동의 이 사 이 형현

제 16 호 수익용재산(북성주차빌딩) 매각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재산(북성주차빌딩) 매각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대구역 인근에 위치한 수익용재산인 북성주차빌딩의 매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북성주차빌딩은 구도심 공구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낙후된 주변환경과 낡은 철골주차건물로 인해 낮은 임대수익이 지속되고 있고, 건물의 노후로 인한 보강공사 등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대구광역시에서 해당건물 일대를 근대 건축자산 보존 목적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간접적인 규제가 예상되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계약기준으로 임대 유지시 연간 4,604만원 수익이 예상되고, 매각시 예금이자율 1.8% 기준으로 5,13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어 매각시 수익 또한 다소 유리한 상황입니다. 2016년 11월에 시행한 탁상감정가는 28.5억원이나 추후 시행예정인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처분금은 수익용기본재산인 기금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성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수익용재산(북성주차빌딩) 매각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매각 승인 내용

가. 매각처분 대상 부동산 현황

소재지	지번	구분	전체면적	장 부 가	탁상감정가 (' 16. 11.)	비고
대구시 중구 북성로 1가	63	토지	1,368.4m ²	827,696,260원	2,670,000,000원	3층 (일반철골조 주차건물)
		건물	1,548m ²	427,617,030원	180,000,000원	
		계		1,255,313,290원	2,850,000,000원	

나. 처분예정금액 : 추후 시행예정 감정평가금액 이상 (탁상감정가 : 2,850,000,000원)

다. 처분금의 용도 : 수익용기본재산(기금) 대체 취득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기동연

이사 이영현

제 17 호 2016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6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일반업무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은 제1차 추경예산 대비 976백만원이 증가한 47,64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 증가, 금리 인하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감소, 관리운영비 감소, 경상비 전출 증가, 법정부담금 전출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인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353백만원이 증가한 7,63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인건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와 그에 따른 전출금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회계 추경예산(안)의 자세한 항목별 주요 편성내용은 회의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회계 추경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법인일반업무회계 제2차 추경예산(안)은 운영수지가 49.4억으로 1차 추경 대비 9.8억이 증가하였으며 자금수지도 1차 추경 대비 9.8억이 개선된 예산(안)으로 전체적으로 1차 추경예산보다 개선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장례식장 추경예산(안)은 장례식장 발인건수 증가 실적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운영수지가 1차 추경 대비 0.5억이 증가하였고 자금수지도 1차 추경 대비 약 0.7억 증가하였으며 법인일반업무회계 전출금도 1차 추경 대비 2.5억 증가하는 등 모든 재정지표가 1차 추경예산 보다 호전된 예산(안)입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센터 공사로 1~2월 장례식장 발인건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법인일반업무회계 47.5억 전출은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 외에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문길주 : 추경예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6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주 호석

이사 강동연

이사 이영현

■ 2016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법인 일반업무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액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수 입	전 입 금 수 입	13,761	12,975	786
	기 부 금 수 입	1,250	1,000	250
	예 금 이 자 수 입	560	620	(60)
	수 익 재 산 수 입	1,945	1,945	-
	잡 수 입	12	12	-
	원금보존기금인출	4,417	4,417	-
	고 정 자 산 매 각	680	680	-
	장 기 차 입 금	17,668	17,668	-
	임 대 보 증 금 수 입	265	265	-
	전 기 이 월 자 금	7,091	7,091	-
	계	47,649	46,673	976
지 출	보 수	748	737	11
	관 리 운 영 비	1,138	1,737	(599)
	지 급 이 자	463	513	(50)
	법 정 부 담 전 출	7,106	6,906	200
	경 상 비 전 출	2,930	2,502	428
	예 비 비 등	201	201	-
	투 자 자 산 지 출	44	0	44
	원금보존기금적립	676	676	-
	임 의 기 금 적 립	82	82	-
	고 정 자 산 매 입	22,758	22,802	(44)
	장기차입금상환	1,086	1,085	1
	임 대 보 증 금 환 급	265	265	-
	차 기 이 월 자 금	10,152	9,167	985
	계	47,649	46,673	976

▶ 법인 수익사업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액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수 입	장례식장운영수입	4,235	4,082	153
	임 대 료 수 입	3,097	2,897	200
	관 리 비 수 입	18	18	-
	예 금 이 자 수 입	1	1	-
	잡 수 입	2	2	-
	전 기 이 월 자 금	283	283	-
지 출	계	7,636	7,283	353
	보 수	671	652	19
	관 리 운 영 비	1,134	1,104	30
	장례식장운영비	546	546	-
	예 비 비	100	100	-
	잡 손 실	2	2	-
	전 출 금	4,750	4,500	250
	고 정 부 채 상 환	57	30	27
	고 정 자 산 매 입	60	100	(40)
	차 기 이 월 자 금	316	249	67
	계	7,636	7,283	353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33 -

기 2 동 연

이 사 이 영 현

제 18 호 2017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2017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자금 예산(안)은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 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법인 일반업무회계 자금 예산(안)의 규모는 2016학년도 제2차 추경예산 대비 1,617백만원 증가한 49,266 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인 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자금 예산(안)은 그 규모가 총 8,722백만원으로서 장례식장 및 임대료 등 운영수입 증가와 관리운영비 증가, 장례식장 수익금의 법인회계 전출금 증가 등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회계 자금예산(안)의 자세한 항목별 주요 편성내용은 회의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회계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 흥 기 : 법인일반업무회계 예산(안)은 운영수지가 49.2억으로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익용 건물(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은 기금 인출 및 기채를 통하여 운영자금 감소 없이 진행되므로 운영수지에서 차입금 상환, 퇴직적립금 등을 제외하고 기초자금 101.5억에서 약 37.3억이 증가한 138.8억이 차기로 이월되는 예산(안)입니다. 장례식장 본예산(안)은 2017학년도 장례식장 목표를 다소 공격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월별, 분기별로 목표 달성을 여부를 확인하고 목표 미달성시 추경 예산을 통하여 비용을 삭감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예산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7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안)

▶ 법인 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2017학년도 예산액	2016 제2차 추경예산액	증 감
수 입	전 입 금 수 입	14,468	13,761	707
	기 부 금 수 입	1,300	1,250	50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 사 주 호 석

이 사 이 영 현

구 분	관 별	2017학년도 예산액	2016 제2차 추경예산액	증 감
지 출	예 금 이 자 수 입	570	560	10
	수 익 재 산 수 입	1,945	1,945	-
	잡 수 입	1	12	(11)
	원금보존기금인출	4,115	4,417	(302)
	고 정 자 산 매 각	-	680	(680)
	장기차입금차입	16,460	17,668	(1,208)
	임 대 보증금수입	255	265	(10)
	전 기 이 월 자 금	10,152	7,091	3,061
	계	49,266	47,649	1,617
	보 수	773	748	25
수 입	관 리 운 영 비	1,765	1,138	627
	지 급 이 자	398	463	(65)
	법 정 부 담 전 출	7,496	7,106	390
	경 상 비 전 출	2,734	2,930	(196)
	예 비 비 등	201	201	-
	투자및기타자산	-	44	(44)
	원금보존기금적립	-	676	(676)
	임 의 기 금 적 립	85	82	3
	고 정 자 산 매 입	20,586	22,758	(2,172)
	장기차입금상환	1,090	1,086	4
	임 대 보증금환급	255	265	(10)
	차 기 이 월 자 금	13,883	10,152	3,731
	계	49,266	47,649	1,617

▶ 법인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2017학년도 예산액	2016 제2차 추경예산액	증 감
수 입	예 금 이 자 수 입	1	1	-
	장례식장운영수입	4,844	4,235	609
	임 대료 수 입	3,542	3,097	445
	관 리 비 수 입	17	18	(1)
	잡 수 입	2	2	-
	전 기 이 월 자 금	316	283	33
	계	8,722	7,636	1,086
지 출	보 수	796	671	125
	관 리 운 영 비	1,348	1,134	214
	장례식장운영비	554	546	8
	예 비 비	100	100	-
	잡 손 실	2	2	-
	전 출 금	5,500	4,750	750
	고 정 부 채 상 환	37	57	(20)
	집 기 비 품 매 입	100	60	40
	차 기 이 월 자 금	285	316	(31)
	계	8,722	7,636	1,086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7월 동연

이 사 이 영현

제 19 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발의.

이 사 장 : 본 법인 임원 중 2017년 4월 27일부로 임기만료 예정인 윤성복 이사님과 2017년 4월 18일부로 임기만료 예정인 이영현 이사님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성복 이사님의 후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제26조의 의결 제척사유에 따라 윤성복 이사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겠습니까?

(윤성복 이사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이 사 장 : 그럼 윤성복 이사님의 후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 성 진 : 그 동안 대우학원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윤성복 이사의 연임을 제청합니다.

이사 신희택 : 연임을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윤성복 이사의 연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참석이사 11인 중 윤성복 이사 본인을 제외한 10인의 찬성으로 윤성복 이사를 2017.4.28부터 임기 4년의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윤성복 이사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취임을 승낙하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이영현 이사님의 후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현 이사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영현 이사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이 사 장 : 그럼 이영현 이사님의 후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희택 : 대우학원 상임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이영현 이사의 연임을 제청합니다.

이사 문길주 : 연임을 동의합니다.

이사 김선용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이영현 이사의 연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이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수호석

이 사 7월 6일

이 사 이영현

이사장 : 그러면 참석이사 11인 중 이영현 이사 본인을 제외한 10인의 찬성으로 이영현 이사를 2017.4.19부터 임기 4년의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이영현 이사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취임을 승낙하다.)

■ 대우학원 임원 신·구 대비표

현 행				변 경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추호석	2015.9.18 ~ 2019.9.17		이사장	추호석	2015.9.18 ~ 2019.9.17	
이사	김성진	2015.6.4 ~ 2019.6.3	교육이사	이사	김성진	2015.6.4 ~ 2019.6.3	교육이사
이사	<u>윤성복</u>	<u>2013.4.28 ~ 2017.4.27</u>		이사	<u>윤성복</u>	<u>2017.4.28 ~ 2021.4.27</u>	
이사	문길주	2016.3.31 ~ 2020.3.30		이사	문길주	2016.3.31 ~ 2020.3.30	
이사	신희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사	신희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사	김성	2017.2.7 ~ 2021.2.6	교육이사	이사	김성	2017.2.7 ~ 2021.2.6	교육이사
이사	김동연	2015.6.4 ~ 2019.6.3		이사	김동연	2015.6.4 ~ 2019.6.3	
이사	박상일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사	박상일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사	신상협	2016.3.19 ~ 2020.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신상협	2016.3.19 ~ 2020.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최홍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사	최홍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사	<u>이영현</u>	<u>2013.4.19 ~ 2017.4.18</u>		이사	<u>이영현</u>	<u>2017.4.19 ~ 2021.4.18</u>	
이사	김선용	2016.2.7 ~ 2020.2.6		이사	김선용	2016.2.7 ~ 2020.2.6	
감사	문휘창	2014.5.14 ~ 2017.5.13		감사	문휘창	2014.5.14 ~ 2017.5.13	
감사	배홍기	2016.4.28 ~ 2019.4.27		감사	배홍기	2016.4.28 ~ 2019.4.27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2017학년도 상근임원 보수 책정(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사장 : 제327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종전과 같아 저와 김동연 이사, 이영현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 란〉

명란>
이사장 추호서

이 삼 각 도 연

이사 이영현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27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7년 2월 9일

이사장	추호석	추호석
이사	김성진	김성진
이사	윤성복	윤성복
이사	문길주	문길주
이사	신희택	신희택
이사	김성	김성
이사	김동연	김동연
이사	신상협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영현
이사	최홍	최홍
이사	김선용	김선용
감사	배홍기	배홍기